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05
----------	-------

발의연월일 : 2026. 2. 2.

발 의 자 : 차지호 · 박희승 · 김영진
임호선 · 안호영 · 황명선
김현정 · 이연희 · 김영호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타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현행법은 2024년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여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나 ‘예술적 창작’등을 주장할 경우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움. 또한 기존 영상물의 단순 편집·합성을 넘어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최신 AI 기술의 특성을 법적 정의가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도입하고, 처벌 요건을 주관적 목적에서 객관적 인식 가능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현실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람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조작하여 만든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하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편집·합성·가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성적 모욕감 또는 성적 굴욕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u>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 ⑤ (생략)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u>사람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합성·조작하여 만든 성적 이미지 표현물(이하 “성적 디지털 위조물”이라 한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편집·합성·가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성적 모욕감 또는 성적 굴욕감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